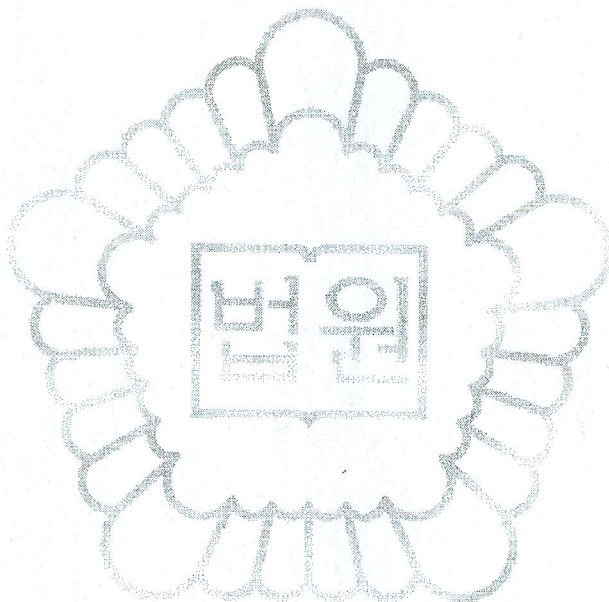


2010다76603

판 결 서



대 법 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2010. 12. 9. 원본영수	인
2010. . . 판결승달	

정본입니다.

2010. 12. 10.

법원사무관 하 홍



사 건
원고, 피상고인

2010다76603 손해배상(기)

1. 고동현 ()

전남 장흥군 ()

2. 김광국 ()

경기 여주군 ()

3. 김대희 ()

서울 도봉구 ()

4. 문승환 ()

안산시 상록구 ()

5. 박상민 ()

안산시 단원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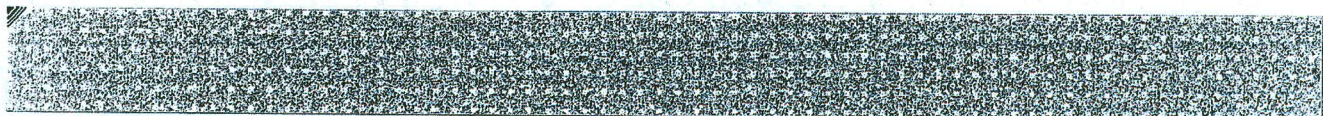
담당변호사 최규호

피고, 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6-1

대표이사 이동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황의채, 김순, 임경윤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08나878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

주 심 대법관 차한성 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

